

2024. 1. 18.(목) 석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 부서: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추진과장

김설희

02-2133-8424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0쪽

안심소득정책팀장

임미희

02-2133-8431

서울시, 안심소득 추가 500가구 모집에 10,197가구 신청... 경쟁률 20대 1

-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 대상, 1,514가구 1차 예비 선정
- 2~3월 소득·재산 기준 등 자격요건 조사후 4월 최종 500가구 확정, 4월 11일 첫 지급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매월 1년간 지원
- 노벨상 수상자도 주목, 중간조사 결과 높은 탈수급률·근로소득 증가 등 삶의 만족도↑

-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150가구)’과 ‘저소득 위기가구(350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0,197가구가 지원해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목) 밝혔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이번에 선정된 1차 예비선정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 대상, 1,514가구 1차 예비 선정>

-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0,197가구였다. 가구 규모 기준으로는 1인가구가 절반 5,103건(50%)을 차지했고,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699건(6.86%)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이었는데, 자치구별 세대수와 신청가구 비율이 유사했다.

《 접 수 현 황 》

가구규모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103(50%)	2,271(22.3%)	1,436(14.1%)	1,387(13.6%)
연령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2,525(24.8%)		5,185(50.8%)	2,487(24.4%)
성 별	남		여	
	4,933(48.4%)		5,264(51.6%)	
모집부문별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538(5.3%)		9,659(94.7%)	

- ‘저소득 위기가구’ 1차 예비선정은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와 가구주 연령(39세 이하/40~64세/65세 이상)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9,659가구 중 980가구를 선정했다. ‘가족돌봄청(소)년’은 신청가구 538가구 중 중복 신청 제외하여 534가구를 예비 대상으로 선정했다.

- 저소득 위기가구는 지난 17일(수) 복지·통계·법률전문가와 시민 등으로 구성된 가구 선정위원회가 입회한 가운데 추첨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
- 이번에 예비 선정된 가구는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고시·공고 및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welfar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정된 1,514가구는 오는 22일(월)부터 31일(수)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①안심소득 참여 신청서 ②사회보장급여신청서 ③소득·재산신고서 ④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서류는 안심소득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족돌봄청(소)년 가구는 주민등록등본, 돌봄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질병 및 질환에 대한 진단서(소견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신청은 가구주가 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수 서류(신청인 신분증 등) 지참 후 가구원이 할 수 있다.
- 시는 참여 신청서류를 제출한 가구를 대상으로 3월 말까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동시에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기초선 조사)도 진행한다.

❖ 가구별 소득기준

(’24년 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매월 1년간 지원>

- 이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기초선조사 완료 가구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4월 초 최종 500가구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4월부터 매월 1년간 지원받는다.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설문조사(기초선조사)에 참여해야 최종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중에도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 등 3년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 서울시는 지난 '22년부터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22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23년에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해 1,100가구를 선정, '23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 2년간 지원한다.

<노벨상 수상자도 주목, 중간조사 결과 높은 탈수급률·근로소득 증가 등 삶의 만족도↑>

- 1년 6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결과 실제로 참여 가구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구(1단계 지원 1,584가구, 비교 3,527가구) 대상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탈수급률을 보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근로소득 증가(21.8%)는 물론 식품·의료 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도 포착됐다.

-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안심소득’을 잘 설계된 정책이며 투명하고 명확하고 간단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으며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안심소득이 재정적 상태와 정신 건강,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 윤재삼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현 복지시스템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를 안심소득이 지원하여 생계부담을 덜어주고, 수급 자격 탈락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안심소득의 큰 특징”이라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 2.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현황
 - 3. 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비가구 선정 장면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한 500가구
- 참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가족돌봄청(소)년: 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 체크리스트 적용
 - 저소득 위기가구: ‘2023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위기상황별 요건 적용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
- 사업기간 : ’24.4월 ~ ’25.3월(1년) 지원 / ’24~’26년 연구분석(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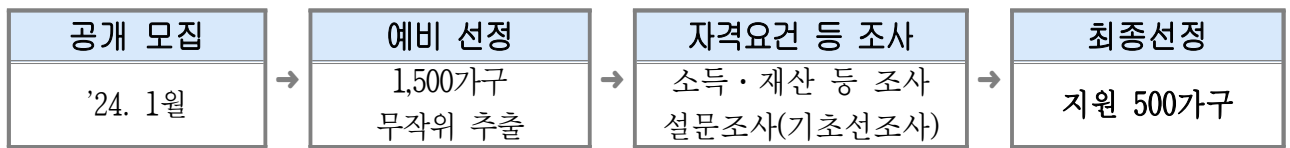
〈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

(’24년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947,090	1,565,110	2,003,730	2,435,220

□ 참여가구 모집·선정

- 공개모집 후 통계적 무작위 추출로 1,500가구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 적합성 조사 후 4월에 최종 500가구 선정(3개월 소요)



※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 ✓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업으로, 소득양극화·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22년 1단계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84가구 선정, ’22.7월부터 지원
 - ’23년 2단계 참여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 선정, ’23.7월부터 지원
- ✓ 안심소득 참여가구는 ’25년 6월까지 최대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하며, 3,500여 가구의 비교집단과 함께 2026년까지 사업의 효과를 심층 연구할 예정입니다.

□ 접수현황 : 총 10,197건(일 평균 927건) ※ 경쟁률 20.4:1

○ 가구규모 · 연령 · 성별 · 접수유형별 현황

(단위 : 건)

가구규모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103(50%)	2,271(22.3%)	1,436(14.1%)	1,387(13.6%)
연령별	39세 이하		40~64세	65세 이상
	2,525(24.8%)		5,185(50.8%)	2,487(24.4%)
성 별	남			여
	4,933(48.4%)			5,264(51.6%)
모집부문별	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538(5.3%)			9,659(94.7%)

○ 일자별 현황

(단위 : 건)



□ 향후일정

-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24.1.17) 및 선정 결과 발표(1.18)
 -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에 공지
- 서류 접수(1.22~1.31) 및 소득 · 재산 등 요건 조사(2~3월)
- 최종 가구 선정(4.1), 약정체결(4월초) 및 첫 급여 지급('24.4.11)



|Q1|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참여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은 3억2천6백만원 이하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가구주(세대주)와 가구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것이며, 재산은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입니다.

(단위:원/월)

구분(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Q2| 안심소득 참여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 예비 가구에 선정되시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기타 구비서류(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 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질병의 경우에는 병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예비가구로 선정된 가구에만 해당하며,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안심소득 급여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Q4| 가족돌봄청(소)년으로 현재 다른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 지원이 되나요?

-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안심소득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안심소득으로 대체되고 자격은 유지됩니다.
- ◆ 다만 LH의 임대주택제공, 의료지원, 스마트폰·태블릿 PC 지원 등 기타 민간자원 연계를 받고 있는 경우는 안심소득과는 다른 내용(현물성)의 지원이므로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5| 저소득 위기가구에 해당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아래 신청요건 중에서 1개 항목이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부문	신청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로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출 증빙서류
저소득 위기 가구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단수·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포함)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관련 통지문 (예고통지포함)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 탈락·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제외 통지서 (중지 통지서 포함)

|Q6| 최종 선정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 500가구는 '24년 4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도 통보할 예정입니다.